

● 성희롱 4차 공판 이모저모 ●

남성과 여성 시각차 한눈에 드러나

“친밀한 관계 있을 수 있는 일” — “희롱 피하고자 한여름에도 겨울 옷” 맞서

친밀한 동작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지난 22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8부 (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희정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공판은 성희롱의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느냐는 원론적인 논란으로부터 출발했다. 한쪽은 교수와 제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한쪽은 업무상 불필요한 접촉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해 불쾌감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우 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최은순 변호사가 준비한 1백1항에 달하는 신문을 통해 신교수가 등을 쓰다듬었고 반팔소매를 입었을 때 팔뚝을 만졌으며 교육시킨다는 핑계 아래 등에 가슴을 밀착시켰다고 한다. 또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장시간을 세워놓고 바라보기 일쑤였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거부하자 업무상으로 괴롭히기 시작해 조교 재임용에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교수측 변호사는 교육과정에서 반색하. 지어

런 행동이 '너무' 예민한 여조교에게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 조교가 “싫다”고 확실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 교수로서는 아무 의식없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지속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임용돼서 근무했다면 성희롱 사건을 문제삼았겠느냐”고 신문했다.

이러한 신 교수측 신문에

현을 '태도'로 분명히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재임용이 됐더라면 성희롱 사건을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희롱 첫 판례를 내려야 하는 재판부도 이 부분에 날카로운 관심을 보였다. 재판장은 “한두번도 아닌 2,30여 차례에 걸친 희롱이었고 그토록 심한 불쾌감에 시달렸다고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후임 조교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동변호인단 중 박원순 변호사는 공판 말미에 우 씨가 확실하게 희롱의 피해자였음을 환기시키기 위해 “신 교수가 앉아있는 우 씨의 팔뚝에 성기를 대고 문지르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날 재판정은 서울대생과 여성단체 관계자 2백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밤 8시 30분에 속개돼 10시 40분까지 진행됐다. 562호 법정은 20여 좌석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온 학생들은 재판정 바닥에 질서정연하게 앉아 끝까지 경청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교수 교체를 요구하며 신 교수 과목의 수강신청 거부운동을 벌여 2과목 중 1과목은 이미 폐강했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수업의 담당교수를 즉각 교체할 것과 신 교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 신 교수 과목 수강신청 거부운동 및 사퇴 요구

대해 우 씨는 “친밀감의 표현을 변호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냐”며 다소 격앙된 어조로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가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계면적였으며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장시간 등에 손을 얹을 경우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털어내기도 했고 교수님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두꺼운 파카를 한 여르에 인드 드 신다는 포

하면서 '계면적었기 때문'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신 교수측 변호인이 질문한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소송이 아니었느냐는 부분을 추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 씨는 “나는 심각하게 태도로 저항했다”며 “재임용이 됐다면 이를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은